

2023. 1월 반상회 홍보자료

연번	제 목	담당부서
1	2023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기획담당관
2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유치홍보과
3	온실가스 감축 1월 실천과제 -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탄소중립정책과
4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안내	세정운영담당관
5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자치분권과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안내	산림녹지과
7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공공하수인프라과
8	퇴직연금 DB형·DC형 전환 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1

2023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분야	사업명	현행	변경
1. 경제 청년 교육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대상 확대 <경제정책과 ☎888-4371>	-	변경(대상 확대) · (대상) 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업 · (지원) 1인 연 30만원(최대 4명)
	2023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제 시행 <민생노동정책과 ☎888-6482>	· (생활임금) 10,868원	변경(기준단가 인상) · (생활임금) 11,074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이자율 축소 <세정운영담당관 ☎888-2135>	· (공제이자율) 10%	변경(공제이자율 축소) · (공제이자율) 7%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산학협력과 ☎888-6781>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 부산지역소재 대학 대학(원)생 및 학부졸업생 · (지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이자 지원(16년 이후 대출분)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지산학협력과 ☎888-6785>	-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 (모집인원) 460명(학기당 230명) · (생활장학금) 학기당 150만원
2. 도시 교통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건설행정과 ☎888-2706>	-	신설 · (대상) 소형·중형 차량 · (통행료) 소형 8,000원, 중형 12,000원
	생활도로 보도 신설 생활도로 다이어트 <걷기좋은부산추진단 ☎888-1352>	-	생활도로 다이어트 · (대상) 보도 미설치 생활도로 - 차도 축소, 보도 신설확장하여 보행공간 확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지원 확대 <탄소중립정책과 ☎888-3552>	· (보급목표) 9,999대 - 전기승용차 7,900대 - 전기화물차 1,960대 - 전기버스 139대	변경(대상 확대) · (보급목표) 13,160대 - 전기승용차 10,000대 - 전기화물차 3,000대 - 전기버스 160대
	스마트형 버스쉘터 설치 <버스운영과 ☎888-3971>	· (폐쇄형·개방형 버스쉘터)	변경(시설 개선) · (스마트형 버스쉘터) - 냉·난방 시스템, 와이파이, 공기 살균기, 이상음원감지 시스템 등
3. 복지 출산 보육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신설 <출산보육과 ☎888-1575>	-	신설(22.1.1.이후 출생) · (대상) 만0세 및 만1세 아동 · (지원) 만0세 : 70만원(매월), 만1세 : 35만원(매월)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 인상 <창조교육과 ☎888-2002>	· (무상급식 단가) - 유치원 : 2,500원 - 초등학교 : 3,310원 - 중학교 : 4,230원 - 고등학교 : 4,410원	변경(기준단가 인상) (무상급식 단가) - 유치원 : 2,750원 - 초등학교 : 3,640원 - 중학교 : 4,650원 - 고등학교 : 4,850원

분야	사업명	현행	변경
3. 복지 출산 보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 확대 <건강정책과 ☎888-3361>	· (거주조건) - 출산(예정)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사 거주	변경(대상 확대) · (거주조건) -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거주기간 고려하지 않음
	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건강정책과 ☎888-3364>	· (대상) - 난임판정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 - 난임여성 80명	변경(대상 확대) · (대상) - 난임판정을 받은 여성과 그 배우자 - 난임여성 133명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아동청소년과 ☎888-1654>	· (운영시간)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 14~19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	변경(운영시간 연장) · (운영시간)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 14~20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
4. 생활 안전 환경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보건위생과 ☎888-3371>	· (유통기한)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 제도	신설 · (소비기한)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 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강화 시행 <자원순환과 ☎888-3695>	-	변경(대상 확대) · (추가대상) 4개 항목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우산비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공공하수인프라과 ☎888-3765>	-	신설 · (안전관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의무 강화 <보건위생과 ☎888-3424>	-	변경(대상 확대) · (의무시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의무사항) 시설 출입구 등 장비 사용안내 표지판 부착
	전통시장 재난·재해예방 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과 ☎888-4744>	-	신설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내 전통 시장 · (지원사항) 안전진단비, 재난· 재해복구비 등
5. 문화 체육 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체육과 ☎888-5021>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1인당 11만원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운영 <문화유산과 ☎888-5085>	· (돌봄대상) 115개소	변경(대상 확대) · (주요내용)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 (돌봄대상) 138개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운영 <체육진흥과 ☎888-3461>	· (지원금액) 85,000원 · (지원기간) 연간 10개월	변경(확대) · (지원금액) 95,000원 · (지원기간) 연간 12개월

2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이자 국가 총역량의 쇼룸으로 국가경제의 신성장 모멘텀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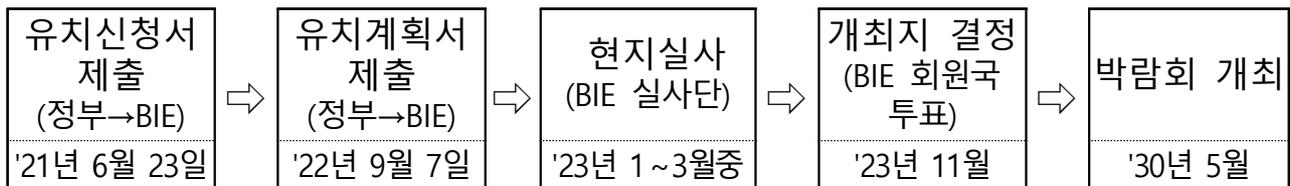
- 개최기간 : 2030. 5월 ~ 10월(6개월간)
- 장 소 : 부산 북항 일원
- 예상관람객 : 3,480만명
- 경제효과 :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50만명

! 세계박람회란 ?

- ▶ 박람회(Expo)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돌아보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 해결 및 미래의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세계박람회기구 (BIE: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가 공인한 행사로서,
- ▶ 인류의 산업,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소개하고 개최국의 역량을 과시하는 장으로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도 불립니다.



추진절차



협조사항

- 구·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구보, 반상회보) 게재 등 홍보
-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지지) 참여 홍보
- <https://www.expo2030busan.kr/kor/onlinesign/form.do?key=2105250009>

3 온실가스 감축 1월 실천과제-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HAPPY NEW YEAR

|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1월 실천과제 |

음식물 쓰레기 다이어트

◆ 음식은 먹을만큼만 ◆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저탄소마을 포레나동래가 함께합니다.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 구입하기
음식물쓰레기 물기 제거하기
식사량에 맞춰 조리하기
잘게 썰어 부피줄여 배출하기

음식물쓰레기를 30%줄이면 1인당 4.3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참고

HAPPY NEW YEAR

부산광역시저탄소마을 부산광역시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
BUSANMETROPOLITAN CITY BUSAN CLIMATE & ENVIRONMENT NETWORK

자료제공 :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94

4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안내

◇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연납)을 제도를 안내하고 납부방법 등을 반상회보를 통해 안내 및 홍보하고자 함

■ 연납개요

○ 내 용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려는 경우 연세액에서 연납 대상기간의 이자율(7%)를 반영한 금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함

○ 운영기간

- 2023. 1. 16. ~ 1. 16.
- 2023. 3. 16. ~ 3. 31.
- 2023. 6. 16. ~ 6. 30.
- 2023. 9. 16. ~ 9. 30.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이체 납부
-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ATM기

■ 당부사항

-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자료이관으로 2023.1.20.(금) 18시 ~ 1. 25.(수) 09시까지 납부불가함

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 신고납부 기간

- 2023. 1. 16. ~ 1. 31.
- 2023. 3. 16. ~ 3. 31.
- 2023. 6. 16. ~ 6. 30.
- 2023. 9. 16. ~ 9. 30.

※ 위 기간 중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며 빨리 할수록 세금감면 효과가 큼

※ 2022년 기존 연납자분들께는 별도 신고 없이도 구·군 세무부서에서 납부서를 발송함

● 신고납부 방법

- ▶ 신 고 : 위택스(www.wetax.go.kr), 구·군 세무부서 방문 등
- ▶ 납 부 : 위택스(www.wetax.go.kr), 전용(가상)계좌 이체 등

② 2023년부터 연납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연납 시 적용하는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연납 공제이자율 : ^{22년까지} 10% → ^{23년} 7% → ^{24년} 5% → ^{25년 이후} 3%

● 연납 공제이자율 축소에 대하여 시민(구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구군

《문의 ☎ 051-○○○-○○○○○》

5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 고향사랑기부제란?

-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21.10월) ⇨ 시행('23.1.1.)
- (내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 부산광역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부산광역시에서 연제구를 뺀 나머지 구에는 기부할 수 있나요? (O)
↳ 부산시 안의 타 구·군과 타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10만원 기부시 13만원+a(지역발전)

-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역상품권, 특산물 등 답례품을 보내드립니다.(선택 가능)
- 기부금으로 만든 고향사랑기금이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듭니다.
 - 고향사랑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어떻게 기부하나요?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기부 ▶ 농협은행

■ 가족과 이웃에 널리 알려주세요!

-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고, 우리 지역을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함께해 주세요.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주요 제한 사항 홍보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 개요

- 최근 전국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급격한 확산추세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소나무 고사목, 산림내 방제작업 훈증더미 등의 인위적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

■ 주요내용

- 벌금 최고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인 입목 또는 원목의 이동
 - 소나무재선충 방제 훈증더미의 훼손 및 이동
 -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등
- 벌금 최고 500만원
 -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에 대한 해당 입목의 벌채 및 훈증, 소각, 파쇄등의 조치
 - 감염목을 판매, 이용하는 경우 등
- 과태료 최고 200만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방제조치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단속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 알고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단기간 내 소나무가 멸종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3년 내 소나무의 멸종과 관련된 정보는 잘못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연구사례에 따르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소나무가 전량 고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3Km

재선충병의 연간 확산거리가 3km인 점을 감안하면, 방제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가 전량 고사하기까지 이론적으로는 약 70년 정도 걸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특별법에 따른 위반행위시 벌칙내용

벌금 최고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반출금지구역에서 금지행위

1.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인 임목 또는 원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3.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일집 외 이동
4.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단, 조경수 및 문제는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관리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후 이동 허용)

벌금 최고 **500**만원

역학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아래 방제 명령 미이행

1.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
2. 방제된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
3.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4. 재선충병 피해지역의 골출 또는 사설 소유자에 대한 운반중구, 직입도구 등의 소독 조치

감염목을 판매·이용하는 경우

벌금 최고 **200**만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처리할 경우

과태료 최고 **200**만원

- 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 등의 토지 출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방제조치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소나무류 생산·유통지역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단속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감염목의 이동 사실과 감염된 나무를 발견시 **1588-3249**

천년의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www.forest.go.kr

우리 소나무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소나무는 전체 산림(637ha)의 약 23%인 147ha(약 16억 그루)를 차지.



목재나 송이, 잣 생산 등 연간 998억여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소나무의 절개와 강인함은 외침에 대항하여 민족의 기상을 이어 온 겨레의 나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수종에 대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2010년) 약 68%가 소나무를 가장 선호.

소나무재선충병이란 무엇 일까요?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을 통해 나무의 상처부위로 침입, 나무의 수분 이동을 방해하여 말라 죽게 합니다.



재선충병 방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사목을 1~2m² 크기로 잘라 쌓은 후 이재를 뿌리고 방수천막(타포린) 또는 컨테이너에 밀봉해 방제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고사된 나무(직경 2cm 이상의 잔가지까지 포함)를 모아 소각해 방제합니다.



고사된 소나무(직경 2cm 이상의 잔가지까지 포함)를 파쇄 장비를 활용하여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해 방제합니다.



7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음식물쓰레기 하수구 배출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악취발생, 하수처리장 문제 등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에 대한 안내임

■ 우리집 '주방용 오물분쇄기' , 불법이었던 말이야??

- 처리기 투입 후 찌꺼기의 80% 이상은 중량제봉투로 다시 배출하여야 함
- 만약 음식물찌꺼기 전량이 하수구로 배출되고 있으면 그건 바로 '불법개조' 또는 '미인증 제품'임
- 불법제품 사용 시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판매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불법제품 사진 및 피해사례



회수통(2차 처리기) 제거 후 분쇄기에서 하수구 배관으로 음식물찌꺼기 전량 배출



분쇄 후 회수부를 바로 통과하여 배관과 연결

■ 협조사항

- 주방용 분쇄기 설치 시 회수통(2차 처리기) 부착 여부 반드시 확인
- 주방용 분쇄기 설치(판매)자가 회수통 미설치 시에는 신고 요청

우리집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질 오염의 주범?

적합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에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찌꺼기 80% 이상 회수 또는 20% 미만 배출

하수도로 직행

< 불법제품 > *미생물방식 제품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회수통 제거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내부 거름망 훼손



한국물기술인증원 확인

*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www.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제품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수 처리장 문제 발생

하천 수질 오염

!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퇴직연금 DB형 · DC형 전환 시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을 통해 소개된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서 DB형과 DC형을 선택하세요.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형**),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형**)

- 확정급여형(DB형)이란,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고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며, 확정기여형(DC형)이란, 기업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개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 계속근로연수×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

-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 DB형이 유리하며, 임금상승률이 낮고 투자에 자신이 있는 경우 DC형이 유리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한 이후에 발생하나 DC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립금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를 위한 주요재원이고, DC형에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통상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DB형 퇴직급여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연동되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급여도 감소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여 DC형 전환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꿀팁 - 금융꿀팁 200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 소식지(구보, 반상회보) 게재 등 홍보